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7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0. 6. 30. 접수 제10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18. 8. 28. 금융농업중기대출로 1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2019. 6. 18. 금융농업중기대출로 43,151,5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제2대출금 43,151,500원에 대하여 2020. 6. 18.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있다.

나. E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6.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0. 6. 30. 접수 제10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E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0. 6. 17.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E이 2020. 6. 17.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피고가 E에게 토스트 및 빵집 대리점 모집사업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E은 갚을 방법이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다고 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으로 대신 상환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었고, E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부여군 F 대 630㎡

2. 충남 부여군 F

[도로명주소] 충남 부여군 G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1.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58㎡

